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Survey on Wages by occupation of SMEs

2015. 11

KBIZ 중소기업중앙회

목 차

I 조사 개요

1. 조사개요	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8
4. 조사항목 해설	9

II 조사 결과

1. 조사대상 일반특성	13
2. 제조부문 생산직 평균 조사노임(일급)	14
1.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16
4.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3. 중소기업업 임금현황	25
1. 임금산정 기준	25
2. '15. 6월 중 중소기업업 월급여 현황	25

부 록

1. 통계표	31
2. 조사표	37

I.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15년도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6월중 중소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 수 확대(850개업체 → 1,000개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 →
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 수 확대(1,000개 업체 → 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 배분제 폐지),
조사 직종 신설(골판지제조공)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생·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 2013. 9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 수 확대(1,200개 →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 수 확대(1,300개 → 1,500개 업체)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상시종사자 20~299인 중소기업
29,086개 업체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5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15. 6. 30
- 조사 대상기간 : 2015. 6. 1 ~ 2015. 6. 30
- 조사 실시기간 : 2015. 7. 1 ~ 8.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8. 조사내용

- 일반사항(기업유형, 노조유무), 임금 산정기준, 6월 급여 등
-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결과중 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체를 산업 중류별(22개), 종사자 규모별(3개)로 구분하여 표본 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2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종사자규모별(3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3. 비금속 광물제품
11. 음료	24. 제1차 금속
13. 섬유제품	25. 금속가공제품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8. 전기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1. 기타 운송장비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2. 가구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3. 기타 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종사자규모

1규모 (20~49인) 2규모 (50~99인) 3규모 (100~299인)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종사자규모별 목표오차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사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중분류의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산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목표오차 〉

(단위: 개, %)

업종	기업체수	목표오차
11. 음료	81	7.5%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51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845	
15. 가죽, 가방 및 신발	301	7.0%
16. 목재 및 나무제품	222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426	
32. 가구	488	
33. 기타제품	373	
10. 식료품	1,852	
13. 섬유제품	1,343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690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126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2,623	
23. 비금속 광물제품	939	
24. 제1차 금속	1,350	
25. 금속가공제품	3,680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078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50	
28. 전기장비	1,819	
29. 기타 기계 및 장비	4,18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401	
31. 기타 운송장비	1,060	

- 업종·종사자 규모별 표본수 결정 공식

$$n = \left(\frac{C}{C_y} \right)^2 / \left[1 + \frac{1}{N} \left(\frac{C}{C_y} \right)^2 \right]$$

여기서, $C = s/\bar{Y}$: 모집단 변동계수(평균급여액)

C_y : 목표오차

N : 업종별·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5.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규모별로 층화한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하고,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적절한 분류변수(종사자수, 급여액)를 선정하여 분류변수에 따라 기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 추출

6. 추정

- 평균급여액 추정

$$\bar{y} = \frac{\sum_h \sum_i w_{hi} y_{hi}}{\sum_h \sum_i w_{hi} x_{hi}}$$

w_{hi} : h 층의 i 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

y_{hi} : h 층의 i 번째 표본기업체의 임금

x_{hi} : h 층의 i 번째 표본기업체의 종사자수

- 평균급여액 추정치 \bar{y} 의 분산추정치

$$\widehat{Var}(\bar{y}) = \sum_{h=1}^H \frac{n_h(1-f_n)}{(n_h-1)} \sum_{i=1}^{n_h} e_{hi}^2$$

N_h : h 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n_h : h 층의 표본 기업체 수

f_n : n_h/N_h

y_{hi} : h 층의 i 번째 표본기업체의 임금

$$w_{..} = \sum_{h=1}^H \sum_{i=1}^{n_h} w_{hi}$$

$$e_{hi} = w_{hi}(y_{hi} - \bar{y}_h \cdot x_{hi})/w_{..}$$

- 평균급여액 추정치 \bar{y} 의 상대표준오차(CV)

$$\widehat{CV}(\bar{y}) = \frac{\sqrt{\widehat{var}(\bar{y})}}{\bar{y}} \times 100$$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업종별 · 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산업중분류	종사자 규모						전체	
	1규모		2규모		3규모		모집단	표 본
	모집단	표 본	모집단	표 본	모집단	표 본		
10.식료품	1,303	51	373	33	176	20	1,852	104
11.음료	63	21	15	6	3	3	81	30
13.섬유제품	1,005	31	245	13	93	7	1,343	51
14.의복/의복악세서리/모피제품	642	51	135	17	68	23	845	91
15.가죽/가방/신발	231	31	53	10	17	2	301	43
16.목재/나무제품	195	28	20	8	7	2	222	38
17.펄프/종이/종이제품	505	33	122	13	63	13	690	59
18.인쇄/기록매체복제	353	29	44	6	29	7	426	42
20.화학물질/화학제품	776	43	230	26	120	18	1,126	87
21.의료용물질/의약품	130	25	73	14	48	9	251	48
22.고무제품/프라스틱제품	1,923	42	468	21	232	24	2,623	87
23.비금속광물제품	719	35	147	23	73	11	939	69
24.1차금속	907	33	284	23	159	11	1,350	67
25.금속가공제품	2,924	33	519	26	237	13	3,680	72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1,291	50	454	20	333	25	2,078	95
27.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660	36	189	26	101	19	950	81
28.전기장비	1,283	35	345	29	191	19	1,819	83
29.기타기계/장비	3,074	36	757	22	357	15	4,188	73
30.자동차/트레일러	1,470	33	582	31	349	27	2,401	91
31.기타운송장비	528	52	273	28	259	20	1,060	100
32.가구	403	23	62	11	23	5	488	39
33.기타제품	290	33	64	13	19	4	373	50
합 계	20,675	784	5,454	419	2,957	297	29,086	1,500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 포함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15년 6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월정상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

2. 급여체계

- 기본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 산 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급여총액 :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 초과근로수당,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급 등)의 합계액이나, 조사결과 분석에서의 월급여에는 특별 급여(상여금, 성과급 등)를 제외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사무직 및 기타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표자(임원),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4. 임금산정 기준(단위)

- 시급 : 1시간을 단위로 임률(임금산정의 기준)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 일급 : 1일을 단위로 임률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 주급 : 1주를 단위로 임률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 월급 : 임금이 월단위로 정하여져 있고 결근일수 등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산정·지급
- 연봉 : 근로자별 능력, 성과(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연간단위로 임금을 결정·지급

II. 조사결과

1

조사대상 일반특성

- 종사자 규모별 특성은 종사자 20인~49인 규모 기업이 7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인~99인 규모 기업이 18.8%, 100인~299인 규모 기업이 10.1% 순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일반기업이 73.6%로 혁신형기업 26.4%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이 95.1%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4.9% 보다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 일반특성 〉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비 중
중소제조업		29,086	100.0
종사자 규모별	20~49인	20,675	71.1
	50~99인	5,454	18.8
	100~299인	2,957	10.1
기업 유형별	일반기업	21,418	73.6
	혁신형기업	7,668	26.4
노동조합 유무별	노동조합 유	1,417	4.9
	노동조합 무	27,669	95.1

주) 혁신형기업 :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1.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15. 6월중 중소제조업(20~299인, 1,5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일급)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3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72,326원으로 전년(70,511원)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작업반장 91,689원 / 단순노무종사원 65,674원 / 제품출하원 70,635원
 제품검사 및 조정원 65,404원 / 수동물품포장원 64,618원 / 부품조립원 65,657원
 기계정비원 84,926원 / 특수차운전원 80,713원 / 용접원 75,031원
 프레스기조작원(자동절단원) 69,118원

-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순위	상위 10개 직종		하위 10개 직종	
	직종명	노임단가	직종명	노임단가
1	컴퓨터 h/w기사	120,614	방직기조작원	61,591
2	회로설계사	115,706	고무제품생산원	64,242
3	컴퓨터s/w기사	113,072	수동물품포장원	64,618
4	안전관리사	107,249	철강포장원	65,043
5	제도사	105,402	식품제조원	65,052
6	컴퓨터운용사	103,725	제품검사 및 조정원	65,404
7	현도사	103,688	재봉원	65,491
8	기계설계사	103,191	쇠톱기조작원	65,572
9	전기기사	101,578	부품조립원	65,657
10	화학공학품질관리사	99,041	단순노무종사원	65,67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 포함됨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15년 6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월정상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39개 직종의 가중평균임
-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 종사자에서 제외
-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 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6. 1. 1(공표일)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2호, 2015.9.21)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4.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5.6월 조사노임	2014.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	기 계 설 계 사	103,191	101,207	기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2	회 로 설 계 사	115,706	114,918	성능과 기능을 갖는 기계의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3	제 도 사	105,402	104,569	설계도면을 그리거나 카드 작업을 하는 사람
4	현 도 사	103,688*	101,817	기계 또는 가구의 모양을 그리거나 오토캐드를 이용해 제품제조를 위해 제품설계에 맞게 표시하는 사람
5	강 판 원	76,984	72,799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제품을 만드는 사람
6	드 릴 링 기 조 작 원	67,802	66,318	드릴링기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7	공 작 기 계 조 작 원	77,629	76,361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8	마 킹 원	69,119	64,359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부위에 선 또는 점을 표시하거나 금을 그어 금속제품을 규격 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위치에 표시하는 사람
9	밀 링 기 조 작 원	71,481	70,589	밀링기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10	보 링 기 조 작 원	76,355	73,505	보링기를 이용하여 피스톤 등을 보링 또는 가공하는 사람
11	볼 반 기 조 작 원	-	66,105	볼반기를 이용하여 제품의 구멍을 가공하는 사람
12	절 곡 원	79,563	78,623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13	귀 금속 세 공 원	89,699*	84,676*	금, 은, 동을 등 귀금속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14	주 물 원	71,679	69,978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
15	단 조 원	69,437	68,262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함마질 하여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16	금 형 원	79,658	78,105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17	목 형 원	81,941	80,813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18	조 형 원	72,747	71,613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드는 사람
19	압 연 원	86,423*	85,388	압연기를 조작하여 압연 가공하는 사람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단조하고 있으나 피가공물이 봉재, 선재, 판재 등의 용도에 따라 단조, 압연, 인발, 압출 등으로 구분 가공한다.)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5.6월 조사노임	2014.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20	압출기조작원	77,412	76,330	제품 성형 시 성형통에 넣고 시멘트 자갈을 붓고 유압기로 조작하여 생산하거나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압출기에 넣고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
21	열처리원	77,526	76,668	용도에 따라 쇠를 열에 의하여 경하게 하거나 연하게 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고주파처리, 유열 처리, 냉각수열처리, 자열 온도열처리 등이 있다.)
22	용해원	71,368	70,046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23	인발기조작원	75,522	73,268	인발기를 조작하여 인발 가공하는 사람
24	태핑기조작원	66,734*	-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유리병과 같은 제품에 TAP(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25	판금원	82,089*	80,245	강판 또는 철판 등으로 제조된 제품의 부분 보수를 하는 사람
26	합금원	80,390	73,392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 합금하는 사람
27	제정기조작원	-	-	철선을 제정기로 자르는 일을 하는 사람
28	다이케스트원	66,012	64,229	정밀한 금형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29	철물재단원	65,897	60,477	철물제품의 장척과 소요 재료를 재단하거나 절단기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재단하는 사람
30	쇠톱기조작원	65,572	64,510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수동으로 제작하거나 실 쇠톱을 수동으로 회전시키며 절단하는 사람
31	모형조각기원	82,088*	79,745*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의 모형대로 가공하는 사람
32	절단원	75,812	74,759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조각기, 샤링기 등에 올려놓고 절단하거나 방전기의 등유에 전극과 공작물을 침유시켜 침전가공 하는 사람. 또는 후철판, 봉재 등을 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가위로 물체를 절단하는 사람
33	프레스기조작원 (자동절단원)	69,118	68,318	알루미늄 압출품을 자동절단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 또는 프레스기를 조작하여 절단절곡성형, 절단천공성형을 하는 사람
34	유리절단 및 재단원	75,622	74,947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하는 사람
35	밴딩머신조작원	72,153	71,392	금속절곡기에 제품을 넣고 구부리는 일을 하는 사람
36	금속교정원	70,869	69,791	왜곡된 물체를 밸런스머신기 또는 수동으로 함마질 또는 열처리하여 교정하는 사람
37	선반원	71,355	69,796	범용 및 CNC선반, 금속자동기계,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38	프레나기조작원	69,696	65,872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39	레이저광선원	67,642	63,526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안경테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제품을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5.6월 조사노임	2014.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40	일 반 화 학 원	89,921	88,973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 화공약품의 첨가 배합 등을 하여 가공하는 사람
41	요 업 원	66,108	64,267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42	합 성 수 지 피 막 원	86,426	85,426	알루미늄샷시 등의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43	권 취 원	68,406*	67,564*	완성된 케이블을 조장별로 권취 또는 외관상의 검사를 하는 사람
44	연 선 기 조 작 원	67,954	67,181	전선을 대연하고 연선기를 조작하여 동심 또는 상호반대 방향을 연성하거나, 유니트 성형, 콰드 등을 연합하는 사람. 또는 케이블 제조 기술이 있는 사람
45	신 선 기 조 작 원	71,982	71,368	신선기를 조작하여 용도에 따라 세선으로 신선하는 사람
46	절 연 원	68,541	67,774*	전선 등 제품을 고무테이프절연지, 외권지, 방부성, 혼합물 등으로 절연하거나 그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47	피 복 원	69,747*	67,049	금속 또는 절연체로 케이블의 외피 또는 외장을 하는 사람 (알루미늄강대, 철선 외장도 이에 분류한다.)
48	고 무 제 품 생 산 원	64,242	60,801	생고무, 합성고무등을 배합하여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일반화학원으로 분류한다.)
49	리 벳 텅 기 조 작 원	-	-	알루미늄 후라이팬과 냄비의 손잡이를 리벳팅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사람
50	용 접 원	75,031	73,271	가스, 산소, CO2, 알곤, 전기용접을 하는 사람
51	연삭기 및 연마기 조 작 원	72,146	71,267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 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52	연 마 원 (기 타)	65,789	64,177	페인트류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지식연마기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53	세 척 원	73,575	72,699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재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 (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54	목 제 품 도 장 원	65,941	61,027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가구 및 목제품을 도장하는 사람
55	도 장 원 (취 부)	70,594	67,812	완제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56	응 용 도 금 기 원 조 작 원	70,495	68,993	화학 처리된 제품에 아연도금을 하거나 물체의 표면을 처리하여 도금을 하는 사람 또는 원재료를 용해하여 가공물을 담가 도금 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5.6월 조사노임	2014.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57	전 기 도 금 원	74,480	73,557	각종 물체(후라이팬, 냄비 등)의 표면처리를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도금하는 사람
58	플 라 스틱 사 출 기 조 작 원	76,499	75,236	자동차용 새시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 등을 사출기 또는 성형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사람
59	배 합 원	73,145	71,801	혼합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 (내화물 점토 배합도 포함됨)
60	가 구 제 조 원	77,345	76,558	가구를 제조하는 사람
61	유 리 제 품 제 조 원	-	75,560*	유리제품(조, 병, 장식용 등)을 제조하는 사람
62	제 재 원	71,272	70,388	원목을 각재 또는 판재로 제조하는 사람
63	펄 프 제 조 장 치 조 작 원	69,806	67,356	펄프를 분쇄, 증해, 고해 등 가공하는 사람
64	합 판 제 조 원	67,988	63,526	각종 합판류를 생산하는 사람
65	제 재 기 계 운 전 원	81,524	80,787	제재기계를 운전 또는 부분적인 고장을 보수하는 사람
66	목 재 건 조 기 계 조 작 원	68,172	66,205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67	제 지 원	74,001	72,853	종이를 생산하는 사람
68	조 선 목 원	-	-	내장목공, 선박에 취급되는 목재를 가공하는 사람
69	골 판 지 제 조 원	71,619	71,052	판지라이닝을 조작하여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람
70	부 품 조 립 원	65,657	63,360	금속기계부품, 산업용V/V,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전자장비 등의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중간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71	전 기 기 계 조 립 원	76,278	75,202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72	중 기 계 조 립 원	75,599	71,174	가적이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73	경 기 계 조 립 원	69,842	67,721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74	전 자 제 품 조 립 원	66,237	64,023	가전용 소형 모터, 자동차 에어컨 전자부품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75	통 신 기 계 조 립 원	77,079	76,233	통신장비에 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76	화 학 공 학 제 품 시 험 원	92,008	91,171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77	금 속 재 료 제 품 시 험 원	80,665	76,905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78	전 기, 전 자 기 계 제 품 시 험 원	80,279	79,420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79	기 타 공 학 제 품 시 험 원	82,340	81,654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5.6월 조사노임	2014.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80	화 학 공 학 품 질 관 리 원	86,885	86,132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1	금 속 재 료 품 질 관 리 원	91,243	90,894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2	전 기, 전 자 및 기 계 품 질 관 리 원	80,059	78,886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3	기 타 공 학 품 질 관 리 원	81,863	81,194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4	화 학 공 학 품 질 관 리 사	99,041	98,714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5	금 속 재 료 품 질 관 리 사	95,529	93,000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6	전 기, 전 자 및 기 계 품 질 관 리 사	94,653	93,001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7	기 타 공 학 품 질 관 리 사	94,080	93,683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8	기 계 정 비 원	84,926	83,626	생산현장 또는 전문분야의 기계를 정비하고 유지보수 하는 사람
89	전 기 정 비 원	82,639	80,807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동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90	차 량 정 비 원	86,167*	85,932	차량 등의 정비사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자격소유자 밑에서 지시에 의하여 정비하는 사람
91	제 품 검 사 조 정 및 원	65,404	62,954	생산현장에서 제품의 조립 및 수평 등의 밸런스를 조정하거나 마무리 작업 또는 마감 처리하는 사람. 또는 완성제품의 최종 검사와 불량여부 검사를 하여 제품을 조정하는 사람
92	기 계 기 술 자	95,838	93,769	석유기기, 생산용 공작기기, 제철소설비 등의 전문분야 기계를 조작 및 보수 유지하는 사람
93	전 선 원	72,343*	-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94	배 관 원	91,745*	89,757*	배관을 설치하는 사람
95	목 재 포 장 원	68,531	67,836	목재로 파렛트 및 나무 상자 등을 제조하여 포장하는 사람
96	기 계 물 품 포 장 원	67,584	66,438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포장 및 관리하는 등의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5.6월 조사노임	2014.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97	수동 물품포장원	64,618	62,729	판넬 포장, 비닐, 종이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98	철 강 포 장 원	65,043	57,658	완성된 알루미늄 새시를 비닐봉투에 넣는 등의 철제 대강 또는 제철물을 포장하는 사람
99	제 품 출 하 원	70,635	70,002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100	전 산 용 지 정 합 원	67,541*	62,330	인쇄된 전산용지를 2장 이상 작업 시 한 세트로 정합하는 사람
101	전 자 조 판 원	77,322	76,523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는 사람. 또는 스티카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102	교 정 사	66,581	61,042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103	컴 퓨 터 웹 디 자 이 너	98,300*	94,479	컴퓨터 웹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사람
104	컴 퓨 터 편 집 사 무 원	93,999	90,508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편집하거나 기획하는 사람
105	인 쇄 기 조 작 원	88,341	87,176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드는 사람
106	제 본 기 조 작 원	82,876	81,879	제책기계 조작 및 제단 기계를 조작하여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거나 책을 만드는 사람
107	전 자 출 판 출 력 원	-	86,609*	전자출판에서 필름을 출력하는 사람
108	연 포 장 재 접 합 원	76,821*	75,412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109	방 직 기 조 작 원	61,591	58,006	생실을 비누나 잣물로 처리 또는 연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하는 사람 또는 직조기 및 편직기를 조작하거나 실을 코온(cone) 또는 치즈(cheese)에 감거나, 정경기를 이용하여 경사를 정경폭과 밀도에 따라 배열 및 감는 사람
110	방 직 기 계 정 비 원	76,256	75,508	방직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111	재 봉 원	65,491	63,867	동력재봉기로 재봉하는 사람 또는 동력재봉기 옆에서 부품공급 등 다듬질, 부품손질을 하는 보조하는 사람. 오바로그기, 이본침, 인타로그기 등을 이용하여 재봉하거나 돛드달이 및 단추 등의 구멍을 작업하는 사람
112	직 물 재 단 사	77,702	76,538	원단을 재단대에 펼치거나 쌓아서 직물재단이 용이하도록 정리하거나 소정규격대로 재단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5.6월 조사노임	2014.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13	염 직 원	75,785	75,030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직염물에 물을 들이는 사람 또는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114	재 봉 기 운 용 사	65,828	64,768	자동재봉틀을 설비하거나 자동재봉틀을 운전하는 사람
115	제 화 원	73,483	72,184	피혁을 깎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또는 수작업으로 제화를 만드는 사람
116	직 포 원	71,666	70,186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117	편 직 원	69,011	64,526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118	피 혁 가 공 원	73,278	72,048	가죽 등 피혁을 수작업으로 제조하는 사람
119	통 신 케 이 블 설 치 및 수 리 원	-	-	통신케이블 설치 및 통신장비의 내외부 배선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20	전 기 기 사	101,578	99,868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121	전 기 산 업 기 사	94,311	93,059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122	전 기 기 능 사	85,836	83,815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
123	목 공 및 유 리 공	-	-	현장에서 건물내부의 창틀과 창문을 제작하거나, 애자(유리)를 절단하여 사용처에 보수하는 사람(목공도 이에 분류한다)
124	컴 퓨 터 H / W 기 사	120,614*	-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125	컴 퓨 터 S / W 기 사	113,072*	98,037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비기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
126	컴 퓨 터 운 용 사	103,725*	100,998*	정보시스템 운영자
127	콘 크 리 트 제 품 성 형 기 조 작 원	79,849	77,949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압축진동성형기를 조작하고 부분적인 고장 등도 보수 할 수 있는 사람
128	특 수 차 운 전 원	80,713	78,877	지게차, 레미콘,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 운전원
129	돌 분 쇄 원	76,443*	74,320	돌을 분쇄시키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5.6월 조사노임	2014.9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30	착 암 기 조 작 원	-	82,394*	착암기를 조작하여 돌을 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131	소 성 원	70,032*	61,927*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하는 사람
132	인 조 석 가 공 원	-	-	인조대리석을 사용하여 제품(가구, 건축자재)을 생산하는 석공
133	폐 수 처 리 원	80,553	79,858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134	식 품 제 조 원	65,052	62,210	아이스크림, 양념육, 빵, 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135	단 순 노 무 종 사 원	65,674	64,150	유리 이동하차, 목재선별분류,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 식당 및 각종 현장의 경비원 등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136	작 업 반 장	91,689	90,278	단순노무종사원을 관리하는 반장,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관리 책임자
137	안 전 관 리 사	107,249	105,970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138	벨 트 콘 베 이 어 작 업 원	69,417	67,807	각종 콘베이어에서 작업하는 사람
139	보 일 러 조 작 원	84,713	81,812	보일러를 제작, 설치 및 정비하는 사람
전체평균		72,326	70,511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1. 임금산정 기준

- '15. 6월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산정 기준(단위)을 보면, 생산직은 시급 기준(49.4%)이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 및 기타는 월급기준(53.6%)이 가장 높았음

〈 직종별 임금산정 기준 〉

(단위 : %)

구 분	시 급	일 급	월 급	연 봉	기 타
생산직	49.4	9.7	29.3	11.0	0.6
사무직 및 기타	1.5	0.2	53.6	44.5	0.2

2. '15. 6월 중소기업 월급여 현황

가. 총 괄

- '15. 6월 중 지급한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월급여(기본급+제수당)는 전년 9월(1,966천원) 대비 3.4% 상승한 2,032천원으로 나타났음
 - 급여내역별로는 기본급은 2.4%, 제수당은 10.2%, 초과근로수당은 14.2% 증가한 반면, 특별급여는 5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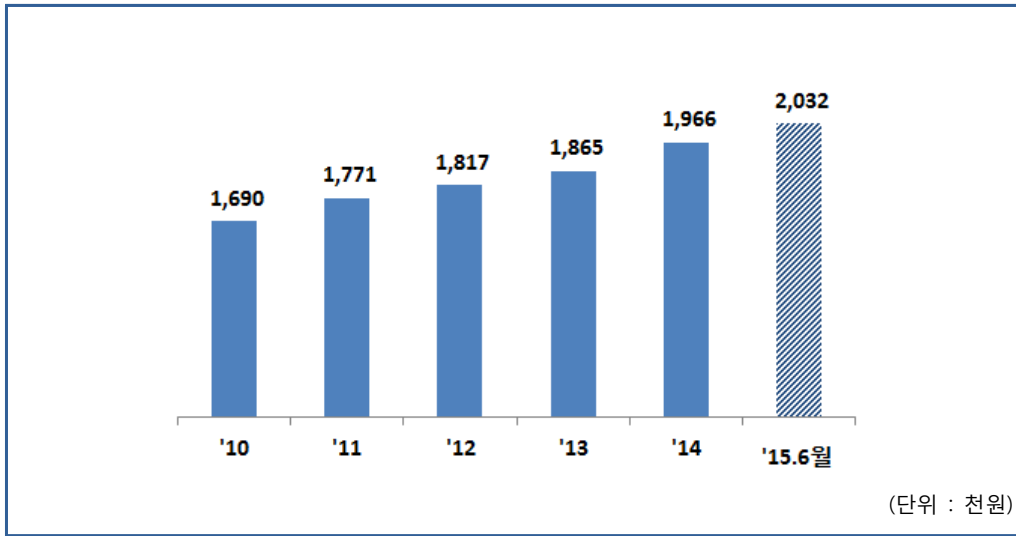
〈 종사자 1인당 월급여 〉

(단위 : 천원, %)

구 분	월급여 (A+B)	월급여 구성		초과근로수당	특별급여
		기 본 급(A)	제 수 당(B)		
2014. 9월	1,966	1,722	244	325	326
2015. 6월	2,032 (3.4)	1,763 (2.4)	269 (10.2)	371 (14.2)	162 (△50.0)

- 주) 1. 월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통상적 수당+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임
 2. ()는 2014년 대비 증가율임

〈 연도별 중소기업 월급여 추이 〉



나. 종사자규모별, 노조유무별 월급여

- 종사자 규모별 월급여를 보면 20~49인 기업이 2,004천원, 50~99인 기업이 2,020천원, 100~299인 기업이 2,079천원으로 규모가 클수록 월급여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 노조유무별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월급여가 2,088천원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 2,025천원보다 높게 나타남

〈 종사자규모별, 기업유형별 월급여 〉

(단위 : 천원, %)

구 분		월급여액 (A+B)	기본급		초과 근로수당	특별급여
			(A)	제수당 (B)		
중소제조업		2,032	1,763	269	371	162
종사자 규모별	20~49인	2,004	1,731	273	311	105
	50~99인	2,020	1,744	275	379	202
	100~299인	2,079	1,821	258	444	204
노 조 유무별	노조 유	2,088	1,791	296	414	304
	노조 무	2,025	1,759	266	366	146

주) 월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통상적 수당+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임

다. 직종별 월급여

- 직종별 월 급여총액을 보면 생산직 종사자는 2,308천원,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는 2,99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 생산직 종사자의 월 급여는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의 월급여의 77.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직종별 월 급여총액 내역을 보면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이 63.2%, 초과근로수당이 19.6%이며, 사무직 및 기타의 경우 기본급 76.0%, 초과근로수당 7.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기본급 비중은 사무직 및 기타(76.0%)가, 초과근로수당 비중은 생산직(19.6%)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직종별 월급여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월 급여총액 (A+B+C+D)					급여격차 (사무직및기타 =100)
			기본급(A)	제수당(B)	초과근로 수당(C)	특별급여(D)	
중소제조업 (20~299인)		2,564 (100.0)	1,763 (68.8)	269 (10.5)	371 (14.5)	162 (6.2)	-
직 종 별	생산직	2,308 (100.0)	1,459 (63.2)	238 (10.3)	452 (19.6)	159 (6.9)	77.1
	사무직 및 기타	2,994 (100.0)	2,274 (76.0)	321 (10.7)	233 (7.8)	165 (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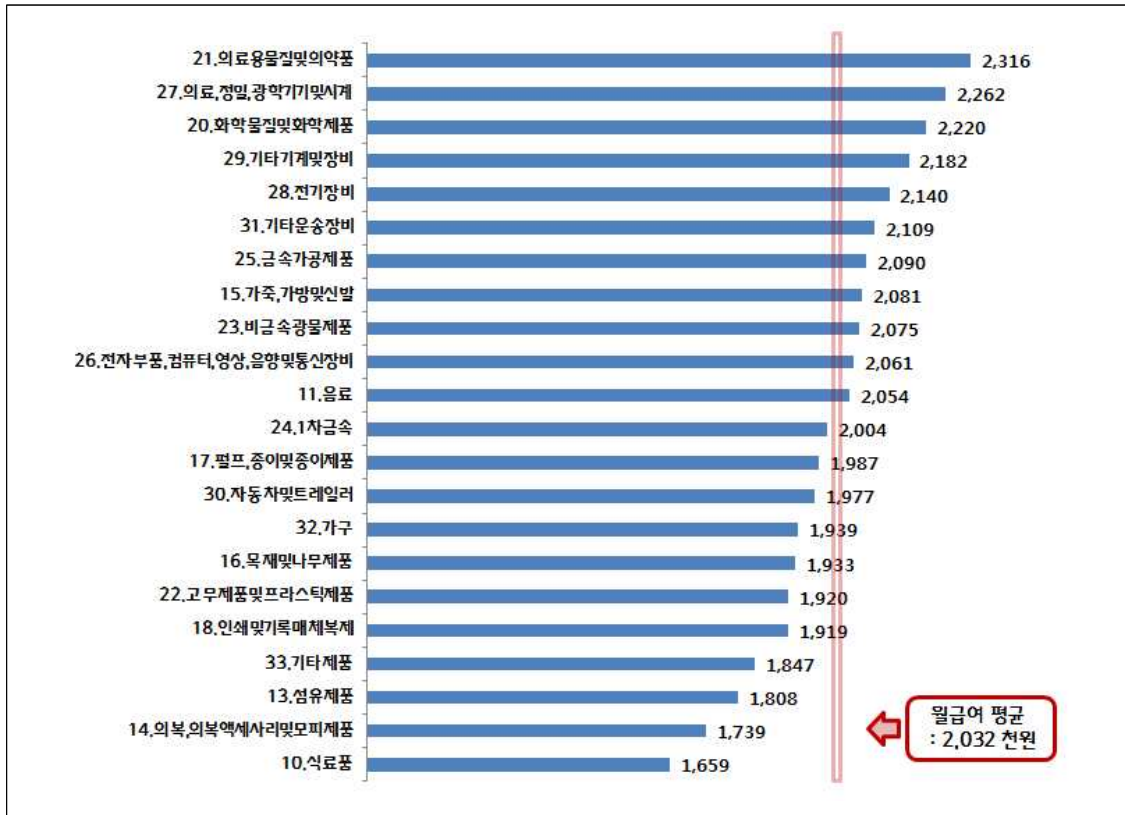
주) ()는 월 급여총액을 100으로 한 임금내역별 구성비임.

라. 업종별 월급여액

- 업종별로 월급여액(기본급+제수당, 초과수당, 특별급여 제외)을 보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의 월급여가 2,316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262천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220천원, ‘기타기계 및 장비’ 2,182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전체 월평균 급여(2,032천원)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업종은 ‘식료품’ 1,659천원,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739천원, ‘섬유제품’ 1,808천원 등 11개 업종이었음

< 중소기업 업종별 월급여액 >

(단위 : 천원)



부 록

1. 통 계 표
2. 조 사 표

1. '15. 6월 중 중소기업 월급여 현황(전체)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총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특별급여
D 제 조 업	2,563,966	1,762,628	170,547	98,439	370,667	161,685
2 0 ~ 4 9 인	2,419,920	1,730,631	183,053	89,915	311,018	105,303
5 0 ~ 9 9 인	2,599,930	1,744,165	188,649	86,752	378,563	201,801
1 0 0 ~ 2 9 9 인	2,727,059	1,820,571	138,962	119,432	443,949	204,145
노 동 조 합 유	2,806,561	1,791,342	174,507	121,898	414,468	304,346
노 동 조 합 무	2,537,124	1,759,450	170,109	95,844	365,821	145,900
일 반 기 업	2,540,375	1,743,407	166,174	97,889	384,012	148,893
혁 신 형 기 업	2,622,528	1,810,339	181,402	99,804	337,543	193,440
10 식 료 품	2,131,791	1,444,702	153,454	61,159	291,123	181,353
11 음 료	2,788,189	1,813,881	125,154	115,032	443,885	290,237
13 섬 유 제 품	2,234,645	1,614,062	131,796	62,400	285,699	140,688
14 의복, 액세서리, 모피	2,062,091	1,561,927	115,724	61,757	220,484	102,199
15 가죽, 가방, 신발	2,436,171	1,848,012	153,390	79,299	277,690	77,780
16 목재 및 나무제품	2,369,111	1,646,785	171,692	114,668	300,853	135,113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664,164	1,721,108	162,552	103,497	406,922	270,085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2,429,641	1,605,539	232,801	80,928	247,962	262,411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723,306	1,909,030	197,742	112,855	270,140	233,539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2,733,603	2,073,363	171,227	71,601	178,766	238,646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497,068	1,623,987	194,979	100,718	461,644	115,740
23 비금속 광물제품	2,717,559	1,717,359	244,178	113,709	492,907	149,406
24 1 차 금 속	2,837,206	1,699,027	163,386	141,779	541,112	291,902
25 금 속 가 공 제 품	2,597,644	1,769,953	215,522	104,548	364,423	143,198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2,581,368	1,834,118	125,076	101,629	378,626	141,919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2,576,745	2,027,139	157,350	77,969	246,102	68,185
28 전 기 장 비	2,681,356	1,863,521	183,311	92,861	306,410	235,253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2,688,390	1,935,051	159,627	87,504	371,991	134,217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545,935	1,690,913	167,236	119,137	411,862	156,787
31 기 타 운 송 장 비	2,732,150	1,797,628	170,309	140,861	479,846	143,506
32 가 구	2,434,490	1,753,710	134,280	51,271	380,474	114,755
33 기 타 제 품	2,275,396	1,632,106	131,975	83,141	273,258	154,916

주) 1. 월 급여총액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초과수당 + 특별급여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1-1. '15. 6월 중 중소기업 월급여 현황(생산직)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총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특별급여
D	제 조 업	2,308,430	1,458,789	140,888	96,903	452,413	159,437
	2 0 ~ 4 9 인	2,170,095	1,460,798	150,125	80,412	376,974	101,786
	5 0 ~ 9 9 인	2,354,953	1,435,154	153,085	89,911	468,757	208,046
	100 ~ 299인	2,463,058	1,475,792	117,732	125,847	544,307	199,380
	노 동 조 합 유	2,638,285	1,472,821	149,302	134,093	541,673	340,396
	노 동 조 합 무	2,272,935	1,457,279	139,982	92,901	442,808	139,965
	일 반 기 업	2,308,583	1,458,697	140,364	98,601	459,939	150,982
	혁 신 형 기 업	2,307,981	1,459,055	142,409	91,970	430,552	183,995
10	식 료 품	1,941,603	1,254,367	124,552	54,522	335,525	172,637
11	음 료	2,504,492	1,470,530	94,754	119,018	563,961	256,229
13	섬 유 제 품	2,047,208	1,383,188	126,624	59,901	338,291	139,204
14	의복, 액세서리, 모피	1,793,965	1,346,474	95,919	46,596	236,353	68,623
15	가죽, 가방, 신발	2,042,003	1,443,595	128,363	59,299	335,304	75,442
16	목재 및 나무제품	2,166,504	1,361,193	160,009	115,577	365,400	164,325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490,752	1,423,592	158,361	120,022	516,738	272,039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2,244,749	1,463,776	200,672	76,945	313,506	189,850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452,972	1,581,003	162,448	94,422	405,871	209,228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2,305,428	1,675,209	128,738	61,497	242,652	197,332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297,610	1,383,202	154,444	100,960	547,039	111,965
23	비금속광물제품	2,544,891	1,396,502	226,409	127,078	606,604	188,298
24	1 차 금 속	2,679,474	1,447,073	147,479	141,372	652,528	291,022
25	금속가공제품	2,366,199	1,504,838	164,502	106,769	439,587	150,503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2,231,186	1,441,886	106,739	79,743	461,632	141,186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2,061,609	1,519,324	127,828	65,322	278,339	70,796
28	전 기 장 비	2,293,262	1,447,698	131,226	81,980	426,710	205,648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2,411,300	1,584,566	142,766	93,323	461,603	129,04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302,214	1,370,558	124,392	122,402	501,456	183,406
31	기 타 운 송 장 비	2,661,327	1,683,390	152,503	155,950	532,272	137,212
32	가 구	2,080,445	1,424,519	110,385	50,549	384,487	110,505
33	기 타 제 품	2,101,749	1,462,083	113,299	79,977	294,725	151,665

주) 1. 월 급여총액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초과수당 + 특별급여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1-2. '15. 6월 중 중소기업 월급여 현황(사무직 및 기타)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총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특별급여
D	제 조 업	2,993,991	2,273,934	220,459	101,025	233,104	165,469
	2 0 ~ 4 9 인	2,864,797	2,211,134	241,690	106,838	193,568	111,567
	5 0 ~ 9 9 인	3,007,788	2,258,629	247,860	81,493	228,401	191,405
	1 0 0 ~ 2 9 9 인	3,143,066	2,363,866	172,416	109,323	285,808	211,653
	노 동 조 합 유	3,071,636	2,293,089	214,211	102,687	214,091	247,558
	노 동 조 합 무	2,984,999	2,271,716	221,182	100,832	235,306	155,963
	일 반 기 업	2,979,651	2,282,969	215,088	96,541	240,120	144,933
	혁 신 형 기 업	3,021,898	2,256,352	230,911	109,751	219,452	205,432
10	식 료 품	2,543,592	1,856,822	216,033	75,529	194,983	200,225
11	음 료	3,176,528	2,283,877	166,766	109,576	279,520	336,789
13	섬 유 제 품	2,729,684	2,223,822	145,454	69,001	146,797	144,610
14	의복, 액세서리, 모피	2,837,655	2,185,133	173,010	105,609	174,583	199,320
15	가죽, 가방, 신발	3,094,249	2,523,201	195,172	112,690	181,503	81,683
16	목재 및 나무제품	2,706,200	2,121,938	191,131	113,155	193,464	86,512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18,824	2,329,575	171,125	69,702	182,331	266,091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2,775,769	1,870,928	292,948	88,383	125,259	398,251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20,401	2,269,530	236,529	133,114	120,972	260,256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113,660	2,426,772	208,940	80,570	122,060	275,318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852,576	2,053,153	267,226	100,287	309,441	122,469
23	비금속 광물제품	3,008,733	2,258,423	274,142	91,165	301,180	83,823
24	1 차 금 속	3,193,085	2,267,486	199,277	142,697	289,737	293,888
25	금속 가공제품	2,976,421	2,203,834	299,020	100,912	241,412	131,243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3,154,112	2,475,640	155,065	137,425	242,864	143,118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3,176,785	2,618,654	191,737	92,700	208,551	65,143
28	전 기 장 비	3,188,378	2,406,772	251,357	107,075	149,244	273,930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3,057,990	2,402,548	182,118	79,743	252,462	141,119
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2,952,404	2,225,190	238,690	113,691	262,441	112,392
31	기 타 운 송 장 비	2,937,304	2,128,533	221,887	97,156	327,989	161,739
32	가 구	2,972,631	2,254,074	170,600	52,369	374,373	121,215
33	기 타 제 품	2,723,215	2,070,575	180,139	91,302	217,896	163,303

주) 1. 월 급여총액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초과수당 + 특별급여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2. 임금산정 기준(생산직)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시급	일급	월급	연봉	기타
D	제 조 업	29,086	49.4	9.7	29.3	11.0	0.5
	2 0 ~ 4 9 인	20,675	46.3	8.5	32.5	12.2	0.4
	5 0 ~ 9 9 인	5,454	58.1	11.1	22.7	7.7	0.4
	1 0 0 ~ 2 9 9 인	2,957	55.4	15.8	19.3	8.2	1.4
	노 동 조 합 유	1,417	44.6	18.0	28.5	7.9	1.1
	노 동 조 합 무	27,669	49.7	9.3	29.4	11.1	0.5
	일 반 기 업	21,418	48.9	10.8	31.0	9.0	0.3
	혁 신 형 기 업	7,668	51.0	6.6	24.6	16.5	1.2
10	식 료 품	1,852	49.8	4.5	33.3	11.8	0.6
11	음 료	81	40.7	6.2	36.4	12.3	4.3
13	섬 유 제 품	1,343	43.8	8.2	45.6	2.4	-
14	의 복 , 액 세 사 리 , 모 피	845	37.6	11.0	37.9	13.2	0.3
15	가 죽 , 가 방 , 신 발	301	38.9	7.1	44.2	7.4	2.5
16	목 재 및 나 무 제 품	222	58.5	15.3	23.1	3.1	-
17	펄 프 , 종 이 및 종 이 제 품	690	57.0	13.7	27.1	2.2	-
18	인 쇄 및 기 록 매 체 복 제	426	32.8	2.7	48.6	15.8	-
20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1,126	27.5	4.6	43.7	24.2	-
21	의 료 용 물 질 및 의 약 품	251	10.4	2.1	37.5	50.1	-
22	고 무 및 프 라 스틱 제 품	2,623	64.8	2.8	26.8	5.6	-
2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939	38.0	6.4	39.7	15.9	-
24	1 차 금 속	1,350	52.7	26.0	17.3	4.1	-
25	금 속 가 공 제 품	3,680	44.3	21.3	23.7	10.7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2,078	51.8	7.4	27.9	12.8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950	33.3	7.5	30.7	27.7	0.8
28	전 기 장 비	1,819	51.5	10.8	25.8	11.9	-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4,188	40.2	7.9	34.5	14.8	2.6
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2,401	75.6	7.2	14.0	2.6	0.5
31	기 타 운 송 장 비	1,060	68.2	10.1	14.2	7.5	-
32	가 구	488	66.9	-	33.1	-	-
33	기 타 제 품	373	34.0	6.0	45.5	14.4	-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3. 임금산정 기준(사무직 및 기타)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시급	일급	월급	연봉	기타
D	제 조 업	29,086	1.5	0.2	53.6	44.5	0.2
	2 0 ~ 4 9 인	20,675	2.0	0.2	55.9	41.8	0.1
	5 0 ~ 9 9 인	5,454	0.6	0.2	49.9	48.6	0.6
	1 0 0 ~ 2 9 9 인	2,957	-	-	44.4	55.0	0.6
	노 동 조 합 유	1,417	0.5	-	51.2	48.3	-
	노 동 조 합 무	27,669	1.6	0.2	53.7	44.3	0.2
	일 반 기 업	21,418	1.8	0.2	57.0	40.8	0.2
	혁 신 형 기 업	7,668	0.8	-	44.3	54.6	0.4
10	식 료 품	1,852	3.4	1.4	58.5	36.8	-
11	음 료	81	-	-	68.5	31.5	-
13	섬 유 제 품	1,343	4.8	-	70.1	25.1	-
14	의 복 , 액 세 사 리 , 모 피	845	-	-	74.1	24.4	1.5
15	가 죽 , 가 방 , 신 발	301	-	-	66.5	33.5	-
16	목 재 및 나 무 제 품	222	3.1	-	57.4	39.5	-
17	펄 프 , 종 이 및 종 이 제 품	690	2.2	-	67.5	30.3	-
18	인 쇄 및 기 록 매 체 복 제	426	1.7	2.9	69.8	25.6	-
20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1,126	0.8	-	47.0	51.5	0.8
21	의 료 용 물 질 및 의 약 품	251	-	-	41.6	58.4	-
22	고 무 및 프 라 스틱 제 품	2,623	3.5	-	52.4	44.1	-
2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939	0.7	-	62.7	36.0	0.7
24	1 차 금 속	1,350	2.0	0.9	62.6	34.4	-
25	금 속 가 공 제 품	3,680	2.4	-	58.6	39.0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2,078	-	-	35.0	65.0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950	-	-	39.2	60.1	0.8
28	전 기 장 비	1,819	-	-	57.6	41.7	0.7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4,188	-	-	41.1	58.9	-
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2,401	1.9	-	46.6	51.5	-
31	기 타 운 송 장 비	1,060	-	-	65.3	33.5	1.2
32	가 구	488	3.6	-	61.7	33.7	0.9
33	기 타 제 품	373	-	-	59.9	40.1	-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2 조사표

2015년도 중소기업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지 역	일련번호	산업분류	규 모	전년도 조사
				참여 <input type="checkbox"/> 미참여 <input type="checkbox"/>

※ 해당항목은 지역본부에서 작성

- 이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 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외로만 사용됩니다.

1. 일반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 - □□□□ - □□□□□□	
대표자				전 화)	
주 소				팩 스)	
종사자수	남(①)	명	여(②)	명	합계(①+②) 명	주생산품
기업유형	①일반기업 ②이노비즈, 경영혁신, 벤처기업			노동조합	① 유 ②무	

주) 종사자수는 6월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 포함,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급여총액(2015. 6월 임금대장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만 대상으로 기재)

(단위 : 명, 원)

직종 구분	상시근로자 ¹⁾	6월 급여총액 ²⁾ (①+②+③+④+⑤)	기본급(본봉) ³⁾ (①)	통상적수당 ⁴⁾ (②)	기타수당 ⁵⁾ (③)	초과근로수당 ⁶⁾ (④)	특별급여 ⁷⁾ (상여금 등) (⑤)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합 계							

- 1) 상시근로자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대표자(임원),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
- 2) 6월 급여총액 2015. 6월 근무에 대하여 지급한 근로자의 급여총액을 기재
- 3) 기 본 급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 본봉을 기재
- 4) 통상적수당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기재 ex)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5) 기 타 수 당 통상적 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제 수당을 기재 ex)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6) 초과근로수당 정상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재 ex)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 7) 특 별 급여 급여 관련규정과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기재 ex)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2-1. 귀사의 임금산정 기준(단위)은 ? ☞ 생산직 () ☞ 사무직 및 기타 ()

- ① 시급 ② 일급 ③ 주급 ④ 월급 ⑤ 연봉 ⑥ 기타()

3. 2015. 6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 '문2'의 '생산직 상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성
- 임금에는 [포함] 기본급, 통상적수당만 포함
 [제외] 초과·연장·휴일 근로(시간)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및 기타수당 등은 제외

(단위 : 명, 원, 시간)

직종 코드	직종명 (※붙임참조)	총인원		월 정상 근로시간 (①)	총지급액 (②+③)	기본급 (②)	통상적수당 (③)	평균일급 (②+③)/① ×8시간
		소계	남					
합 계								
신규직종 해설								

조사응답자	성명	소속부서	전화번호	e-mail	조사원	조사책임자
					①	①

〈 2015. 6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 기본사항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대표자(임원),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15년 6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 작성예시

▶ A사의 6월 임금 지급 현황

- 갑(기계설계사) : 6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을(기계설계사) : 6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병(밀링기조작원) : 6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직종 코드 ¹⁾	직 종 명 ¹⁾ (※ 붙임참조)	총인원 ²⁾		월 정상 근로시간 ³⁾ (①)	총지급액 ⁶⁾ (②+③)	기본급 ⁴⁾ (②)	통상적수당 ⁵⁾ (③)	평균일급 ⁷⁾ (②+③)/① ×8시간	
		소계	남						여
1	기계설계사	2	1	1	358	5,470,000	4,920,000	550,000	122,235
9	밀링기조작원	1	1	0	208	2,280,000	2,080,000	200,000	87,692

- 1) 직 종 코 드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하여 해당 및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직 종 명 ※ 해당직종이 없는 경우 유사 직종코드를 기재하고, 신규직종은 '직종코드' 란에 "신규"로 기재하고, '신규직종 해설'란에 해당 직종 설명 기재
-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 3) 월 정 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근로 시간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6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 4) 기 본 급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6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 5) 통상적수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6월 지급된 통상적수당 합계 기재
- 6)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6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
- 7) 평 균 일 급 해당 직종 총인원의 6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 참고 】 고용노동부 고시 2015년도 최저임금 : 시급 5,580원, 일급 44,640원(8시간기준)

2015년 중소기업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발행일 : 2015년 11월 6일

발행인 : 박 성 택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0~3157

F A X : 02) 786-2037

인터넷 : <http://stat.kbiz.or.kr/>

E-Mail : stat@kbiz.or.kr

인 쇄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연구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